

1. 개정이유

해양재난의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해 종합평가하도록 하고, 긴급구조교육 담당기관 지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재난 긴급구조활동 종합평가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의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단 구성, 관련 자료 요구, 평가결과 보고·통보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해양재난에 대한 긴급구조교육 운영사항 등 마련(안 제16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 재난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재난대비능력 제고·유지를 위해 긴급구조교육 운영사항 등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긴급구조활동 평가) 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단장은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조본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본부의 각 부장.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 소속 요원
 2.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단체의 요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평가단의 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의견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단장은 대응 중 작성된 서류·영상·사진 및 관계자 면담 자료 등을 토대로 긴급구조활동을 평가하며, 영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단은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구조본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구조본부의 장 및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그 평가결과를 상급 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조본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보완할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 및 대응체제의 개선, 예산의 우선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구조본부의 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재난대응관리자 및 종사자의 현황과 재난대응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한 대응을 한 관리자 및 종사자의 현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한다)”를 “한다)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이하 “중앙구조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중앙통제단장”을 “중

양통제단장 및 중앙구조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본부장과”를 “본부장,”으로, “단장이”를 “단장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청장 또는”을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긴급구조활동 평가) ①</u> <u>「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u> <u>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u> <u>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u> <u>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u> <u>“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u> <u>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긴급구조</u> <u>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u> <u>활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u> <u>한다)을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u> <u>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u> <u>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u> <u>경우, 평가단의 단장은 구조본</u> <u>부의 장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u> <u>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조본부</u> <u>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u> <u>민간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u> <u>어야 한다.</u> <u>1. 구조본부의 각 부장. 다만, 단</u> <u>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u> <u>우에는 각 부 소속 요원</u> <u>2.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u> <u>관·단체의 요원 또는 평가에</u> <u>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u>

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평가단의 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의견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단장은 대응 중 작성된 서류·영상·사진 및 관계자 면담 자료 등을 토대로 긴급구조활동을 평가하며, 영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단은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구조본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구조본부의 장 및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그 평가결과를 상급 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조본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	<u>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u> <u>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u> <u>정이 필요하거나 개선·보완할</u> <u>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u> <u>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u> ⑥ <u>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구</u> <u>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제5항의</u> <u>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u> <u>에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u> <u>및 대응체제의 개선, 예산의 우</u> <u>선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u> <u>하여야 한다.</u> ⑦ <u>구조본부의 장은 평가 결과</u> <u>를 토대로 우수한 재난대응관리</u> <u>자 및 종사자의 현황과 재난대</u> <u>응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한</u> <u>대응을 한 관리자 및 종사자의</u> <u>현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u> <u>있다.</u>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5. 그 밖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 한다)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이하 “중앙구조본부장”이라 한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중앙통제단장 및 중앙구조본부장-----
5. -----

----- 본부장, -----
----- 단장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

